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 6. 23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6월 5일 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6년 6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2006년 6월 22일

제12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설명자 보건위생과장 조병구)

가. 개정이유

- 2003.7.16 국무총리 주재 「호국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의 일환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을 범 정부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 및 가족이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면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양 및 주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통한 주민건강복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목적내용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를 삭제(안 제1조)
-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변경(안 제2조제1항)
-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1종 보호대상자, 2종 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대상자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로 변경(안 제3조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항목 신설(안 제3조제2항제7호)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정(1999. 2. 8. 법률 제5854호)
 - 의료급여법(2001. 5.24 법률 제6474호)
 - 의료급여법 시행령(2001. 9. 9. 대통령령 제17379호)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01.10. 9. 보건복지부령 제202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2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예산조치 : 없 음
- 협의사항 : 의약과와 협의되었음
- 기 타
- 입법예고(2006.2.28. ~ 3.20.) 결과 : 의견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김찬재)

-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1999.2.8 제정되었고, 2001.5.24 2001.5.24 의료보호법이 폐지되고 의료급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과 상이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제2조제1항 및 조례안 제3조제1항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며,
- 조례안 제3조 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과 유가족 등에게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3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의하면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진료를 행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시행령에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유공자, 제대군인은 본인에 한하여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비용으로 하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지방단체에 부담지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또한, 유가족에 대한 진료비 면제에 있어서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서 국가가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 본인에 대한 전액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도 있는

50% 이외의 부분에 대한 국가부담비용을 보훈청에서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유가족에 대한 면제 있어서는 국가 또는 보훈병원의 면제 비율인 60% 범위 안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 다만,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이 보훈병원 및 국가의료기관 만으로는 부족한 형편이고, 국가유공자 등이 우리의 국민이며,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생활 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규정을 원용할 수도 있다고 사료됨.

4. 審査結果：原案可決